

평택대학교 대학원 학칙

전부개정일 : 2025.04.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평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2. 전문대학원 :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가안보대학원, AI융합대학원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과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둔다.

1.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관련분야 교원의 1/2이상) 연구실적 기준을 인문·사회계열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3편 이상, 예·체능계열 2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0.23)
2.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기준은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또는 연구실적)으로 하며,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공개강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을 포함)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박사학위과정 : 국내 또는 외국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2. 석사학위과정 : 국내 또는 외국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②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Th.M.) 지원자는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각 대학원별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 지원자는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입학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각 대학원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재학연한 초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는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M.A., Th.M.) 수료자 중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자는 논문포기 대체학점 이수를 위한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수료자의 논문포기대체학점 이수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과 및 전공변경) 전과 및 전공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
5.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

제3장 등록 및 학적(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

제11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등록금에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 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입영(복무) 휴학으로 구분한다.

③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 입영(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이내에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학위를 수여 받았으나 학위가 취소된 자(학력 및 경력 위조 등)
6. 논문포기대체학점(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수료자 재입학 경우만 해당), 영구수료특례 재입학자의 제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따름
7.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결의된 자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학점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학위		수업연한	재학연한
대학원	박사		6학기	10년(20학기)
	석사		4학기	5년(10학기)
피어선신학 전문대학원	박사	Ph.D.	6학기	10년(20학기)
	석사	Th.M.	4학기	4년(8학기)
		M.T.S.		
		M.A.		
		M.Div.	6학기	6년(12학기)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5학기	5년(10학기)
상담대학원	석사		5학기	
글로벌비즈니스대학원	석사		5학기	
통번역대학원	석사		5학기	
국가안보대학원	석사		5학기	
AI융합대학원	석사		5학기	

② 일반대학원의 '학·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은 '학·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수업연한을 1년(2학기) 이내 단축하여 운영하는 석사학위 과정과 6개월(1학기)이내 단축하여 운영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신입학한 학생에 한한다.

④ 수업연한 단축은 각 대학원 학과 및 전공별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 ⑥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석사(1년), 박사(2년)으로 한다.
- ⑦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학연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업일수 및 형태) ①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평일 주야간 및 주말수업, 원격수업, 집중수업, 현장실습수업,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9조(이수학점 및 수료) ① 각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이수학점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각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매 학기 초과학점 허용 기준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③ 각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학점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④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⑤ 수료는 각 대학원의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를 인정하는 성적은 총평균 성적이 B등급(평점 3.0)이상 이어야 한다.
- ⑥ ‘수료연구생’이라 함은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을 말한다.
- ⑦ 수료연구생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취득학점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점이나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입학 또는 편입학 전 국내외의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	A	B ⁺	B	C ⁺	C	F	I	P	N
점수	100 -95	94 -90	89 -85	84 -80	79 -75	74 -70	69 이하	미완	통과	미통과
평점	4.5	4.0	3.5	3.0	2.5	2.0	0			

-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의 의무를 소정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미완 ‘I’(Incomplete) 등급을 줄 수 있다. 미완은 성적정정 기간 내에 확정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정정 기간 내에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미완은 ‘F’ 등급으로 간주한다.
- ③ 평점 2.0이상(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학점('P'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대학원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점교류) ① 각 대학원은 국내외 타 대학원과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학점교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약에 따른다.

제24조(학위과정연계)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5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 또는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각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기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학위수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위청구 논문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학위청구논문제출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하며, 학위증은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27조(학위수여취소)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공개강좌

제29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교양, 직무,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

여 공고한다.

③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장학금 및 학생지도

제30조(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포상) 총장 또는 대학원장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33조(권리장전)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권리장전을 둔다.

제8장 조직 및 대학원위원회

제34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과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두며, 직제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각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주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전공과제의 지도 및 수학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6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대학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대학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8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학칙 제개정) 이 학칙과 시행세칙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학원에 서 개정안을 입안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학내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내규의 제·개정)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2조는 1996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평택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신학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16조 제1항의 단서의 사회개발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한 규정은 1999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개정 제22조(편입학) 삭제하여 제8조의 2(재입학)으로, 제23조(편입학) 삭제하여 제8조의 3으로, 제26조(정원외 입학)삭제하여 제8조의 4(정원외 입학)으로 개정 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 현재 재적중인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05.04.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2022년 08월 24일에 개정된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학칙은 2025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개정 2025.10.23.)

구분	대학원별	학위	학 과	전공	입학정원	
					박사	석사
일 반 대학원	대 학 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50	40
			상담학과	상담		
			아동청소년학과	아동, 청소년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부동산학과	부동산		
			AI융합학과	AI융합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 영유아교육·보육		
			상담학과	상담, 미술치료		
			음악학과	연주 관현악, 성악, 피아노, 합창지휘		
				음악치료		
			부동산학과	부동산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전 문 대학원	피어선신학 전문대학원	박사	신학과	(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상담학	20	18
		석사	신학과	(M.A.) 신학		
				(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M.T.S.) 신학, 상담학, 기독교세계관, 스피치리더십		
				(M.Div.) 목회학		
특 수 대학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노인·기관운영, 다문화, 재활상담, 웰다잉	/	24
			아동청소년 복지학과	영유아교육·보육,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상 담 대학원	석사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	/	40
			상담학과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중독상담, 위기상담, 군상담, 독서치료, 놀이치료, 코 칭서비스상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원	석사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물류경영	/	10
			국제무역학과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경영		
			경영학과	경영학, ESG경영		
	통번역 대학원	석사	통번역학과	한영통번역	/	18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국가안보 대학원	석사	국가안보학과	국가안보, 공공안전	/	14
	AI융합 대학원	석사	AI융합학과	AI융합, AI가상자산	/	14
소 계					70	178
총 계					248	

【별표 2】 학위의 종류(개정 2025.10.23.)

구분	대학원	학 위	학 과	전 공		수여학위	
일반 대학원	대학원	학술학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	
			상담학과	상담		상담학박사	
			아동청소년학과	아동, 청소년		교육학박사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물류학박사	
			부동산학과	부동산		부동산학박사	
			AI융합학과	AI융합		AI융합학박사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환경융합공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 영유아교육·보육		교육학석사	
			상담학과	상담		상담학석사(상담)	
				미술치료		상담학석사(미술치료)	
			음악학과	연주	관현악	음악학석사(연주)	
					성악		
					피아노		
					합창지휘		
음악치료		음악학석사(음악치료)					
부동산학과	부동산		부동산학석사				
환경융합공학과	환경융합공학		환경융합공학석사				
전문 대학원	피어션신학 전문대학원	학술학위	신학과	(Ph.D.)	구약신학	철학박사(Ph.D.)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상담학		
		학술학위	신학과	(Th.M.)	구약신학	신학석사(Th.M.)	
					신약신학		
					조직신학		
				(M.A.)	역사신학	문학석사(M.A.)	
					실천신학		
					신학		
		전문학위	신학과	(M.Div.)	목회학	목회학석사 (M.Div.)	
				(M.T.S.)	신학	일반신학석사 (M.T.S.)	
					상담학		
기독교세계관							
스피치리더십							

구분	대학원	학 위	학 과	전 공	수여학위
특수 대학원	사회복지 대학원	전문학위	사회복지학과	노인·기관운영	사회복지학석사(노인·기관운영)
				다문화	사회복지학석사(다문화)
				재활상담	사회복지학석사(재활상담)
				웰다잉	사회복지학석사(웰다잉)
			아동청소년 복지학과	청소년지도 및 상담	교육학석사(청소년지도및상담)
				영유아교육·보육	교육학석사(영유아교육·보육)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원	전문학위	국제물류학과	국제물류	물류학석사(국제물류)
				물류경영	물류학석사(물류경영)
			국제무역학과	국제경제	국제무역학석사(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학석사(국제경영)
				무역경영	국제무역학석사(무역경영)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
				ESG경영	경영학석사(ESG경영)
	상담 대학원	전문학위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	상담학석사(미술치료)
			상담학과	가족상담	상담학석사(가족상담)
				아동상담	상담학석사(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상담학석사(청소년상담)
				중독상담	상담학석사(중독상담)
				위기상담	상담학석사(위기상담)
				군상담	상담학석사(군상담)
				독서치료	상담학석사(독서치료)
				놀이치료	상담학석사(놀이치료)
				코칭서비스상담	상담학석사(코칭서비스상담)
	통번역 대학원	전문학위	통번역학과	한영통번역	통번역학석사(한영통번역)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석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국가안보 대학원	전문학위	국가안보학과	국가안보	국가안보학석사(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가안보학석사(공공안전)
	AI융합 대학원	전문학위	AI융합학과	AI융합	AI융합학석사
				AI가상자산	AI가상자산학석사

【별지 1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과(전공)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학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논문작성자의 경우에만 기재)

년 월 일

평택대학교 ○○ 대학원장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평택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2호 서식】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과(전공)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학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평택대학교 ○○ 대학원장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평택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3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평택대학교 ○○대학원장 (직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평택대학교 총장 (직인)